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 달서

- 대구광역시 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2021. 10.



대구광역시 달서구

<http://www.dalseo.daegu.kr>

[청렴감사실]

- 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설 명 자: 청렴감사실장

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19. 8월)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중대 범죄인 경우에는 부조리 신고기한을 확대함으로써 부조리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을 [현행] 「지방공무원법」 상 징계시효 기준 (일반 부조리는 3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 부패와 관련된 부조리는 5년)에서 [개정안] 예외적으로 「형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이상 등)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로 확대하였습니다.(안 제4조제2항)

□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

- 본 조례안을 2021. 9. 13일부터 10. 5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 2021. 10. 12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비용 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부조리 신고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오니,
-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0082/62
------------	---------

제출년월일: 2021. 10. 15.
제 출 자: 달서구청장
(청렴감사실장)

1. 제안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19. 8월)사항을 반영하여 중대범죄인 경우에는 부조리 신고기한을 확대함으로써 부조리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중대범죄인 경우에는 부조리 신고기한을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로 확대(안 제4조제2항)
 -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을 [현행] 「지방공무원법」 상 징계시효 기준(일반 부조리는 3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 부패와 관련된 부조리는 5년)에서 [개정안] 예외적으로 「형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 등)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로 확대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고

나. 관계법령

- 1)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 2)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2021. 9. 13. ~ 10. 5.) 결과: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비대상
- 4)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 원안 동의
- 5)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6) 조례 · 규칙 심의 결과: 원안 가결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 등)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의 완성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신고기한) (생략) <u><신 설></u>	<p>제4조(신고기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 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 등)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의 완성일 까지로 한다.</p>

【관 계 법령】

□ 『형법』 [시행 2020. 10. 20.] [법률 제17511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시행 2020. 5. 5.] [법률 제16922호, 2020. 2. 4., 일부개정]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 ·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 · 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형법」 제129조 ·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併科)한다.

□ 『형사소송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6924호, 2020. 2. 4., 일부개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